

의안번호	2214233
의 퇴 인	김소희 의원
회 답 일	2026. 1. 21.
추계번호	25A615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중앙행정기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억 7,500만원, 2031년 10억 8,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1억 3,500만원(연평균 10억 2,700만원)으로 추계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5까지 신설)	975	1,000	1,026	1,053	1,081	5,135	1,027
－ 상임위원등 보수	831	856	882	909	937	4,415	883
－ 비상임위원 수당	90	90	90	90	90	450	90
－ 전문위원회 위원 수당	54	54	54	54	54	270	54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 신설 (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 및 소관 사무)	전기·가스·열 에너지 요금에 관한 통합적·합리적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둔(제1항)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¹⁾를 적용하지 않음(제2항) 1. 제10조의3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에너지요금 결정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함(제3항) 1.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요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에너지요금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의무규정
	안 제10조의3 신설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에너지요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1.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의 인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공급규정 중 요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에너지요금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의무규정

1)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4 신설 (에너지요금위원회의 구성 등)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함(제1항)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제2항) 1.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련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3.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련 기업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정하되 위원회에서 호선(제3항)	의무규정
	안 제10조의6 신설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음(제1항)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제2항)	의무규정
	안 제10조의12 신설 (전문위원회)	에너지요금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10조의13 신설 (사무처의 설치)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에너지요금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제1항)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안 제10조의14 신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의2 신설 (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 및 소관 사무)	○ (일부 추계)	국무총리 소속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 - (상임위원 등 보수)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중앙행정 기관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외 상임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정지출 증가 - (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 수당) 에너지요금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안 제10조의12에 따라 설치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및 안전 검토 수당 지출 증가 - (사무처 직원 보수) 안 제10조의13은 에너지요금 위원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업통상부에서 전기·가스 및 집단에너지 요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던 기존 인력의 이체 외에도 공무원 순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등 재정지출 증가 가능
	안 제10조의3 신설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기본경비) 위원회가 신설되고 사무처가 구성되는 경우 에너지요금위원회의 기본경비 또한 이에 수반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안 제10조의4 신설 (에너지요금위원회의 구성 등)		- (주요사업비) 에너지요금위원회로의 개편 과정에서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업통상부가 실시 중인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실시되는 경우 사업비 지출 증가 가능
	안 제10조의6 신설 (위원의 임기)		위 재정수반요인 중 사무처 직원 보수, 기본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경우 아래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①상임위원 등 인건비, ②비상임위원 수당, ③전문위원회 위원 수당만을 추계 대상으로 함 - (사무처 직원 보수)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처 직원 보수 지급 증가액은 사무처 정원 중 순증 인원에 직급별 인건비 평균 단가를 곱하여 추계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무처 정원 중 기후에너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안 제10조의12 신설 (전문위원회)		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소속 유관 부서로부터 이체받을 인원과 순증 인원의 규모가 각각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으며, 직급별 분포 또한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1]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관 부서 정원 * [참고자료 2] 산업통상부 유관 부서 정원
	안 제10조의13 신설 (사무처의 설치)		－ (기본경비)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액은 일반적으로 인건비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인건비 증가액에 기본경비 증가액을 연동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에너지요금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순증 규모를 알 수 없어 보수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기본경비 증가액 또한 추계하기 어려움
	안 제10조의14 신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비) 에너지요금위원회가 그동안 기후 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아 확대된 지원조직(사무처)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이관 외에도 사업비가 순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에너지요금위원회가 확대 또는 신규 추진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에너지요금위원회 소속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등”)의 보수, ②비상임위원의 수당, ③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10조의2제2항은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상임위원등 보수의 경우 위원장(1명)에게는 장관급, 부위원장(1명)에게는 차관급, 상임위원(3명)에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봉급 외에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0조의4제1항에서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위원정수와 상임위원의 수를 알 수 없으나, 추계를 위하여 위원정수는 15명, 상임위원은 전기, 가스, 집단에너지 각 분야별로 1명씩 총 3명으로 가정
 - － 개정안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가 ① 「전기사업법」, ② 「도시가스사업법」 및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업통상부로부터 이관받는 점을 고려
 - 개정안은 위원의 신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업무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위원장에게는 장관급, 부위원장에게는 차관급, 상임위원에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업무는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업통상부가 수행하는 업무로 각 분야의 요금 관련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최종적 결정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의 제안이유²⁾에서도 에너지원별 가격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동 위원회가 필요함을 밝힌 점을 고려
 -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수당으로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 정근수당 및 성과상여금 등의 경우 장·차관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각종 정액수당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외의 다른 수당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개정안 제안이유

(...)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및 상임위원(고위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 단가는 장관급 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 각목명세서」를 준용하되, 봉급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하고 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비상임위원 수당과 전문위원회 위원 수당의 경우 회의 참석 수당과 안전검토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전기위원회의 비상임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석 수당과 안전검토 사례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준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의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비상임위원의 수는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위원정수 15명에서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및 상임위원(3명)을 제외한 총 10명으로 함
- 전문위원회는 전기, 가스, 집단에너지 각 분야별로 1개씩 총 3개가 설치되며, 위원정수는 전문위원회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가정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³⁾에서 전기요금 분야를 포함한 전기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정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준용
 - － 위 규정에 따라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문위원회를 실제 운영 중이라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 업무를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하므로 총 재정 소요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를 차감하여야 할 것이나,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현재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음⁴⁾
- 에너지요금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5회,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회별로 연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법률·분쟁조정 분야,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전력계통 분야, 구조개편 분야 및 시장조성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기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명칭이 ‘소비자보호 및 전력시장’ 전문위원회로 변경됨

- 연간 회의 횟수는 전기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최근 4년간(2022~2025년) 회의 개최 횟수⁵⁾를 고려하여 가정
- 수당 단가는 참석 수당 20만원, 안전검토 사례비 40만원으로 가정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⁶⁾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자기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에게는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참석 수당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⁷⁾에 따른 기본 참석비인 20만원으로 하며, 안전검토 사례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른 전기위원회 위원 안전검토 사례비*를 준용하여 40만원으로 함
 -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⁸⁾에 따라 단순한 회의 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에너지요금위원회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함

5)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2022~2025년)

(단위: 회)

구분	전기위원회	전문위원회		
		법률분쟁조정	소비자보호 및 전력시장	전력계통 및 신뢰도
2022	16	0	0	0
2023	15	3	0	6
2024	15	2	1	2
2025	11	1	0	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6)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1.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목)

차. 위원회 참석비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7)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1.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목)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0,000원내(서면심사 15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8)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1.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목)

차. 위원회 참석비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 모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며, 위원의 수와 연간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상임위원등 보수

- 상임위원등의 보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별로 봉급과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을 더하여 산출하며, 2027년 8억 3,100만원, 2031년 9억 3,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4억 1,500만원(연평균 8억 8,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원장(1명)의 보수는 2027년 1억 7,700만원, 2031년 1억 9,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9억 4,100만원(연평균 1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부위원장(1명)의 보수는 2027년 1억 6,900만원, 2031년 1억 9,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억 9,800만원(연평균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상임위원(3명)의 보수는 2027년 4억 8,500만원, 2031년 5억 4,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5억 7,600만원(연평균 5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2] 상임위원등 봉급 및 수당 단가 추계(2026년 기준)

(단위: 천원)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고위공무원)
봉급 단가		155,634	151,149	146,999
수당 단가	정액급식비	1,680	1,680	1,680
	직급보조비	14,880	11,400	7,800
	소계	16,560	13,080	9,480
합계		172,194	164,229	156,4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3] 상임위원등 보수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원장(장관급)	177	183	188	194	199	941	188
부위원장(차관급)	169	174	180	185	191	898	180
상임위원(고위공무원)	485	499	515	531	547	2,576	515
합계	831	856	882	909	937	4,415	883

주: 1) 상임위원의 경우 3명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
 2)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 수당

- 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 수당은 각 위원회별로 위원 정수에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억 2,000만원(연평균 1억 4,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에너지요금위원회 비상임위원(10명)에게 지급되는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의 합산액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억 5,000만원으로 추계
 - 연간 참석 수당: 10명 × 15회 × 20만원 = 3,000만원 (5년간 총 1억 5,000만원)
 - 연간 안전검토 사례비: 10명 × 15회 × 40만원 = 6,000만원 (5년간 총 3억원)

- 에너지요금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3개 전문위원회, 총 45명)에게 지급되는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의 합산액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억 7,000만원으로 추계
 - 연간 참석 수당: 45명 × 2회 × 20만원 = 1,800만원 (5년간 총 9,000만원)
 - 연간 안전검토 사례비: 45명 × 2회 × 40만원 = 3,600만원 (5년간 총 1억 8,000만원)

[표 4] 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 수당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비상임위원 수당	90	90	90	90	90	450	90
전문위원회 위원 수당	54	54	54	54	54	270	54
합계	144	144	144	144	144	720	1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에너지요금위원회 사무국 신설에 따른 사무처 직원 중 순증 인력에 대한 인건비, 위원회 기본경비 및 사업비 순증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관 부서 정원

[에너지전환정책실 정원]

(단위: 명)

부 서 명	고위공무원단		3·4 급	4 급	4·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가	나									
에너지전환정책실	1										
전력산업정책관		1									
전력산업정책과			1		1	5	3	1	1		
전력시장과				1	1	3	3	1			
청정전력전환과				1	1	2	2	1			
전력망정책관		1									
전력망정책과				1	1	3	2	2			
계통운영혁신과				1	1	3	2	1			
분산에너지과				1	1	5	2				
재생에너지정책관		1									
재생에너지정책과			1		1	5	2	1			
태양광산업과				1	1	4	2	1			
풍력산업과				1		4	2				
풍력보급팀					1	1	1				
원전산업정책관		1									
원전산업정책과			1		1	4	3	1			
원전환경과				1	1	4	2				
원전지역협력과				1	1	3	2	1			
합계	1	4	3	9	12	46	28	10	1	0	11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정원]

(단위: 명)

부 서 명	고위공무원단		3·4 급	4 급	4·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가	나									
기후에너지정책실	1										1
수소열산업정책관		1									1
열산업혁신과				1		4	2				7
합계	1	1	0	1	0	4	2	0	0	0	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정원]

(단위: 명)

구 분	고위공무원단		3·4 급	4 급	4·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가	나									
전기위원회 사무국			1			3	3	2			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자료 2] 산업통상부 유관 부서 정원

[자원산업정책관 정원]

(단위: 명)

부 서 명	고위공무원단		3·4 급	4 급	4·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운 영	계
	가	나										
자원산업정책관		1										1
자원안보정책과			1		1	6	3					11
석유산업과				1	1	5	2	1		1		11
가스산업과				1	1	4	4	1				11
석탄산업과				1	1	3	2					7
광물자원팀					1	4	1					6
자원안전팀					1	3	1					5
합계	0	1	1	3	6	25	13	2	0	1	0	5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